##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0.11.12		16		
2	2016.5.27		17		
3	2016.8.1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공학교육인증 시행세칙

- **제1조(목적)** 이 세칙은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,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에 의거하여 공학교육인증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공학교육인중 참여대상) 본 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다음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 이동을 불허한다.<개정 2016.5.27>
  - 1. 복수전공, 연계/융합전공, 부전공 이수자<개정 2016.5.27>
  - 2. 해외유학생 및 편입생과 같이 인증제도 이수에 있어 특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자<개정 2016.5.27>
  - 3.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전공에 속한 자<개정 2016.5.27>
  - 4. 학·석사연계과정 참여자<개정 2016.5.27>
  - 5. <삭제 2016.5.27>
- 제3조(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) ① 공과대학의 각 학부(과) 또는 전공은 공학교육인 증제도를 운영하는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6.5.27>
  - ②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은 각 학부(과) 또는 전공별로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적용하며, 이는 (사)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의 교육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.
  - ③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학칙을 따른다.
- 제4조(공학교육인중 이수요건) ①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적용 받는 학생은 각 학부 (과) 또는 전공의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본 교의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졸업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- ② 학칙 제20조와 관련하여 각 프로그램별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으로 선후수교과 목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자는 선수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후수교과목의 수강을 허용한다. 단, 선·후수교과목의 동시 수강은 예외로 한다.[신설 2010.11.12]
  - ③ 또한 각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성과 성취 최소이수요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며, 최소이수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자는 해당학기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<개정 2010.11.12>
  - ④ 별도의 공학교육인증의 이수요건은 각 학부(과) 또는 프로그램별 내규로 따로 정한다.<개정 2010.11.12>
- 제5조(편입생) ① 편입생 및 소속변경학생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.
  - ② 편입생 및 소속변경학생은 각 프로그램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전 학교 (학과)에서 이수한 과목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정일: 2010.3.31 개정일: 2016.8.1

- ③ 편입생 및 소속변경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부(과) 또는 프로그램별 내규 에 따른다.
- **제6조(복학생 및 전과생)** 복학생 및 전과생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세부사 항은 각 학부(과) 또는 프로그램별 내규로 따로 정한다.
- 제7조(공학교육인증위원회) ①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각 프로그램 PD(Program Director)로 구성된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6.8.1>

- ② 공과대학의 각 학부(과) 및 프로그램에서는 공학교육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공학교육인증위원회 세부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- 제8조(심사시기 및 이수포기) ① 각 전공의 학생은 각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내규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 또는 비인증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②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의 공학인증 프로그램 규정에 따른다.
- 제9조(프로그램명) 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의 명칭을 다르게 졸업장에 명시한다. 이에 따른 명칭은 학칙 및 각 프로그램별 내규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.
- 제10조(기타) 이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<개정 2016.8.1>

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07. 3. 1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 및 프로그램으로 전입하는 전입생부터 적용한다.
- 2.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07. 3. 1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 및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으로 전입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- 3. ① (시행일)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6년 3원1일부터 적용한다.
  - ② (경과조치) 제2조는 2016학번 신/편입생부터 적용한다.
- 4.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정일: 2010.3.31 개정일: 2016.8.1